[서식 예]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



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											
		- 1	<u> </u>	<u> </u>					0일	없	음
청 ①	성 명		0		② 주 민 (사업자			11111	1-1111	111	
구 ③	상 호				(④ 전 호	화 번	호	(02)	000-00	00
⑤ 주소 또는 인 사업장소재지			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 - OOO)								
⑥ 처	분 청	스스 세			⑦ 조	사 기] 관				
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(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): 2012년 12월 1일											
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(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, 기분,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)※ 2012년도 기분 양도소득세 금355,930,720원, 방위세 금71,186,140원 부과처분											
① 심사한) 심사청구를 한 날 2013년 2월 15일 (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13년 3월 25일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)							일			
① 불복의 이유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)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.											
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합니다.											
20○○년 ○월 ○○일											
청구인 김 ○ ○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
국세심판소장 귀하 첨부서류: 1. 불복이유서(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)											
2.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(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)									구여		
	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판청구에 관한 사									사	
	항을 위임합니다(다만,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).									}).	
위임장	0 0 7 7	٥١)	대	대		리 인					
	위임자(청구	7	· 분	성	명	入) 업장:	소재지		전화번	호
		세	무 사								
		공인]회계사								
	(서명 또는	인) 변	호 사	(서명 5	E는 인	<u>[</u>) (위	000) - O C	0)		
심 판 청 구 서 접 수 증 (접수번호 호)											
성 명				주	소						
철부서류 _접 수자											
 1. 불복이유서 ()					. '						

22226-79811민

99.2.23. 개정승인

2.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() 접수일자인

 $210\text{mm} \times 297\text{mm}$

(신문용지(특급) 34g/m²)



불 복 의 이유

1.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

- (1) 청구인은 청구외 김□□, 이□□와 공동으로(공유지분 각 1/3) 20○○. ○. ○.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. 기재 ○○시 ○○동 ○○ 외 5필지 부동산을 취득하여, 20○○. ○. ○. 청구외 박□□에게 위 목록의 ○○시 ○○동 ○, 같은 동 ○○의 ○, 같은 동 ○○의 부동산을 금198,270,000원에, 같은 해 8. 29. 청구외 최□□에게 같은 동 ○○의 부동산을 금 90,000,000원에, 같은 해 6. 29. 청구외 정□□에게 같은 동 ○○의 부동산을 금 50,750,000원에, 같은 해 10. 10. 청구외 유□□에게 같은 동 ○○의 부동산을 금 50,750,000원에, 같은 해 10. 10. 청구외 유□□에게 같은 동 ○○의 부동산을 금 산을 금 205,100,000원에 각 양도하였습니다.
- (2) 청구인은 20○○. ○. ○.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중 ○○시 ○○동 ○○○ 부동산을, 같은 해 9. 12.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중 위 같은 동 ○○○의 부동산을 청구외 양□□의 이름으로 각 취득하였다가 20○○. ○. ○.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위 같은 동 ○○○ 부동산을 금 204,869,700원에, 위 같은 동 ○○○의 부동산을 금 111,830,600원에 각 양도하였습니다. 그리고 위 같은 동 ○○○의 부동산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윤□□이 취득한 위 같은 동 ○○○의 ○, ○, 위 같은 동 ○○○의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금 24,921,000원입니다.
- (3) 청구인은 20○○. ○. ○. 청구외 주식회사 ☆☆쇼핑센터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3 기재의 각 부동산을 금 950,000,000원에 취득하여 120○○. ○. ○. 청구외 오□□ 외 2인에게 금 1,300,000원에 양도하고, 같은 해 10. 31. 피청구인에게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금 13,784,868원 및 그 방위세 금 2,756,973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.
- (4)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인정사실과 같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 보아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,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여.
 - (가)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.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실 지거래가액인 금 181,373,333원으로,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,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

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\$\frac{8}{9}\$ 31,604,489원으로 결정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당초결정 란 기재와 같아 \$\frac{8}{2}\$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고.

- (나)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. 기재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고, 또한 위 부동산이 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되어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실소유자이면서 청구외 양□□ 이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되어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배제하고,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고,
- (다)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3. 기재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 이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여,
- (라) 20 ○ . .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금액인 양도소득세 금 355,930,720원 및 그 방위세 금 71,186,140원의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.
- (5)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〇〇. 〇. 〇.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하였으나 20〇〇. 〇. 〇. 기각되었습니다.

2. 이 사건 처분의 위법

(1) 청구인은,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 23조 제4항 단서, 제45조 제1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환산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조항이 그성질상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조세행정의 운용방침 또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련된 명령(행정규칙)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납세의무자인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닌데다가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요건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, 가사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

조 제3항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법규명 회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위 거래행위는 위 규정이 정하고 있다고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실수요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본원칙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여야 하며.

- (2)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소득세법시행 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, 제4항, 제45조 제1 항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준시가원칙에 위배되고 모법에 위임근거 없이 모법 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고, 따라서 위와 같이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,
- (3)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.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의 위 부동산의 양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됨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은 위법 한 것입니다.

<별지> 부동산 목록



- 1.
 ○○시
 ○○구
 ○○동
 ○○번지의
 1
 대지
 100평방미터

 ○○시
 ○○시
 ○○동
 ○○번지의
 2
 대지
 200평방미터

 ○○시
 ○○구
 ○○동
 ○○번지의
 4
 대지
 400평방미터

 ○○시
 ○○구
 ○○동
 ○○번지의
 5
 대지
 200평방미터

 ○○시
 ○○사
 ○○등
 ○○번지의
 6
 대지
 300평방미터
- 2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잡종지 1,250평방미터
- 3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임야 125,000평방미터

<별지> 세금계산서 : 기재 생략

	수 1 대한법률구조공단
1	
or.kr	

제출기관	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 위원회(행정심판법 23조)	청구기간	・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연합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		
청 구 인	피처분자 또는 지위승계자 (행정심판법 16조)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승계행정청			
제출부수	청구서 및 부본 각1부	관련법규	행정심판법			
불 복 방 법	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(행정심판법 51조)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 재청구는 할 수 없다. 다만,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(행정소송법 19조, 38조)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・다만,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(행정소송법 18조) 					